

충청북도중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61

제출연월일 : 2003월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 제안이유

-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외거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중평 문화회관 사용허가 정지 및 취소 규정중 일부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

 주요골자

- 문화회관의 사용허가 정지 및 취소 규정 구체화
 - "기타 출장소장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"
 - ⇒ "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"로 함

 의안전문 : 따로붙임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)출장소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고용된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1. ~ 2 (생략)</p> <p>3. <u>기타 출장소장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</u></p>	<p>제12조(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)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2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</u></p>

관계법령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